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11.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1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창기황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5월 재단법인 「마포문화재단」이 새로 설립되면서 2008년 9월 마포아트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만 일부조정하고, 이후 5년간 물가상승 및 운영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, 사용료 및 수수료는 조례개정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, 그 밖에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할인규정 마련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(1)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였음.

-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액, 3일 전까지 75퍼센트, 1일 전까지는 50퍼센트를 반환하도록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함.

※ 소비자 이익을 우선토록 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

(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요청사항 반영)

(2) 안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강습료 등의 반환 규정 개정함.

-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적용함.

(3) 안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할인 대상자 추가 및 할인율 개정함.

-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
(4) 안 제15조에서는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특정인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음.

- “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”를 삭제함.

(5) 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에서는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조정함.

- 사용료의 징수기준 시간과 상한액을 일부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마포아트센터」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프로그램 및 강좌 등 사용료징수 기준 중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조례에서 상한액과 하한액만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할인규정 및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례에서는 수강료 환불에 대한 세부규정과 강습료 반환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였고,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규정을 신설하고, 세부적인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 장애인이라는 문구를 연상하게 하는 “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”라는 문구는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며, 그 밖에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을 종전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

조정하는 등 사용료의 징수 기준시간과 상한액 일부를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규정은 규칙으로 정하였음.

- 그러나 구의회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「마포아트센터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2008년 9월 이후 조례를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점이나, 지금까지도 조례를 개정함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며,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8,768만원의 실질적 수익증대 효과로 마포아트센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,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에 저촉됨이 없고, 2013. 10. 10. ~ 10. 30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